

제265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0. 11.23(월)10:00

고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 목적(안 제1조)
- 나.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제10조)
- 다.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 제19조)
- 라.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관한 규정 (안 제20조 ~ 제22조)
- 마.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 ~ 제37조)

4. 관계법령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7조(기본계획)부터 안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까지에서는 군수가 영 제7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4조(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부터 안 제19조(수당 등 지원)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임기, 회의 및 수당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20조(설치)부터 안 제22조(중간지원조직 구성)까지는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고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고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9.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고령군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2.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고령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변형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 할 때,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알아보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 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7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3.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세운다.

제9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늦어진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줄인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3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제12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 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 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의 경비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발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 하여 구

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자체 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 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적정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발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과장 및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추진(운영)위원장

3.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발전 협의회에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회의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지원)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0조(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 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22조(중간지원조직 구성) ①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중간지원 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3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세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③ 제 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할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끝내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위탁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제27조(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

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 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8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9조(추진단 업무) ① 추진단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각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3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때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주문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각종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보여 주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군수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령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